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2032048(본소), 2022나2032055(반소),
2022나2034815(반소)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2032048(본소), 2022나2032055(반소),
2022나2034815(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60036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2.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표현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1. 11.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600369(본소), 2021

가합513929(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를 각하한다.
3.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취지

F 주식회사가 202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년 금 제1181호로 공탁한 359,216,331원 중 307,633,7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2020. 5. 4.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탁공무원)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1) 가. 원고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부터 제3항(제1심판결 제3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18면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 고치고, 그 이하의 “피고 E”을 모두 “E”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 고치고, 그 이하의 “피고 B”를 모두 “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표 아래 제3행의 “E” 및 표 아래 제2행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면 표 아래 제6행을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 “민법 제487조이”를 “민법 제487조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밑에서 제5행의 “피고 C, D, E”과 밑에서 제4행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 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을 “다.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의 “피고”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요지

제1심법원이 피고 D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D의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B에 이 사건 공탁금 중 307,633,78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그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만 발생하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여전히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307,633,78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채권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 본소 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비록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위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참조).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C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에는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2)』

○ 제1심판결 제12면 제4행의 “방법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B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 1) ① “원고가 2020. 5. 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20. 12. 3. 피고 C에 송달된 사실, ② 피고 D이 2021. 2. 2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의 2021. 6. 3.자 변론준비기일에는 피고 C의 지배인 H이 참석하였는데, 위 변론준비기일에서 피고 D은 위 반소장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H은 “이 사건 부도(앞서 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20. 5. 4.경의 당좌부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무렵 B로부터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아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늦어도 위 2021. 6. 3.경에는 “B의 당좌부도일인 2020. 5. 4.경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B의 채권자인 피고 D이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 C은 적어도 위 2021. 6. 3.경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9. 13. 제기된 피고 C의 반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 2) 한편, 항소심에서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그런데 원고는 2022. 10. 2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C의 반소가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명시적으로 위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위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심리하면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을 충분히 심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D이 피고 C과 별도로 제1심에서 반소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 3) 따라서 피고 C의 반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피고 C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안승훈, 판사 구태회

별지

1. 물품대금청구채권

B가 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307,633,78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2. 공탁금출급청구권

F 주식회사가 2020. 8. 20. A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금1181호로 공탁한 359,216,33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끝.

1) 원고(반소피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 및 피고(반소원고)들을 상대로 본소로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그리고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는 제1심에서 반소로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만이 항소하였고,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반소피고)만이 항소하였으며,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은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 청구, ②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 ③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 청구로 제한된다.

2) 한편, 피고 D은 2022. 10. 27.자 준비서면(2022. 10. 27. 제출된 피고 D의 준비서면 중 두 번째로 제출된 것임)에서 위 2018다277785, 277792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것처럼(각주 1), 피고 D은 본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